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592

발의연월일: 2024. 7. 10.

발 의 자:김 현·박민규·복기왕

이준석 · 강준현 · 오세희

이훈기 · 최민희 · 이해민

황정아 • 한민수 • 김우영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도록 하고,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수 있도록 「보험업법」(법률 제19780호, 2024. 10. 25. 시행)이 개정됨.

그런데 개정 「보험업법」의 내용은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에만 해당되는 것으로, 이 법에 따른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개선이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손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

는 것임(안 제45조의2, 제45조의3 및 제57조).

주요내용

- 가.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, 보험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(안 제45조의2 신설).
- 나. 체신관서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도록 하고, 이를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5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).
- 다. 전산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로 하여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누설하거나 업무외의 용도로 사용·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, 이를 위반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(안 제45조의3제4항 및 제57조 신설).

법률 제 호

우체국예금 · 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5조의2(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) ① 실 손의료보험(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. 이 하 같다) 계약의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, 보험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 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(이하 "요양기관"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・영 수증,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체신관서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「의료법」 제21조 및 「약사법」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과 절차,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5조의3(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· 운영 등) ① 체신관서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

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・운영하여야 한다.

-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·보안성·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보험업법」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・운영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
- ④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·운영, 업무위탁의 범위·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6장(제57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장 벌칙

제57조(벌칙) 제4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과 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에 대하여는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45조의2(실손의료보험계약의
	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
	송) ① 실손의료보험(실제로 부
	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보
	험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계약
	의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, 보험
	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험
	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「국민
	건강보험법」 제42조에 따른
	요양기관(이하 "요양기관"이라
	한다)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
	<u>서·영수증, 진료비 세부산정내</u>
	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
	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
	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
	를 체신관서에 전자적 형태로
	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
	<u>있다.</u>
	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
	기관은 「의료법」 제21조 및
	「약사법」 제30조에도 불구하
	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
	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

<신 <u>설></u>

따라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 청 방법과 절차,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5조의3(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 의 구축·운영 등) ① 체신관 서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전산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 여야 한다.

-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·보안성·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보험업법」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 산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
- ④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 사하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업

<u><신 설></u> <신 설> 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 나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서 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 용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 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 산시스템의 구축·운영, 업무위 탁의 범위·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.

제6장 벌칙

제57조(벌칙) 제4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45조의2제1 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